

## 경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진로 및 취·창업 지원업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, 진로탐색, 경력개발 및 일자리매칭을 지원하고, 고용 거버넌스를 위한 대학 및 지역청년층의 취·창업, 진로지도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확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제1조의 목적과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진로개발 및 취·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진로 및 취·창업 상담 지원
3. 대학 내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인프라 구축
4. 진로 및 취업정보자료 출판 및 배부
5.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활동 지원
6.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사업 업무
7.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·운영
8. 취·창업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 운영 관리 및 지원
9. 취·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
10. 부서별 공간적·기능적연계 진로 및 취·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
11. 취·창업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조사와 만족도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자체관리
12. 청년-기업간 정보탐색 및 취업연계 활성화 운영
13. 기업체 연계활동을 통한 기업DB관리 및 지역청년층 취업현황 관리 지원
14. 그 외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교무위원인 인재개발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
**제4조(조직 및 구성)**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총장직속으로 한다.

② 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컨설턴트를 두고, 행정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④ 센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컨설턴트 중 1인 이상의 선임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청년고용지원협의회)** ①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취·창업 관련 중요사항 협의 및 기능적 연계 구축 또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7인 이상의 대학 및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.

② 대학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대학 및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에 필요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⑥ 대학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
2. 부서간 진로 및 취·창업관련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
3. 부서간 통합상담 연계서비스 지원
4. 기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필요 사항

⑥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정부 및 지자체지원사업의 공동프로그램 계획
2. 양질의 일자리발굴 및 구직정보제공 연계
3. 기타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의 필요 사항에 관한 계획
4. 기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필요 사항

**제6조(재정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대학지원금,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금, 기타 수입(지원)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 사업지침에 따른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<2022.04.18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행정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